



| 환경 관리 질의응답 사례 |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 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현장 세륜기 잔재물 처리건

Q 토목공사 현장입니다. 세륜기 가동 후 발생되는 폐기물을 슬러지, 건설폐토석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알고 있기에선 사업장 배출시설로 처리하여 매립장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처리비용도 비용이지만 환경부에서 재활용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기에 건설 재활용 촉진법으로 신고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군요.

A ① 건설공사현장에서 세륜기에 침전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고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되며, 토사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됩니다. ②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11의2 규정에 따라 수분함량 70%이하로 탈수·건조하여 토사류를 50%이상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중간처리기준(최대지름 100mm이하, 유기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 이하)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 4조에서 정하는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련 정보(법령해석, 환경부의 주요정책 등)를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사업장폐기물 전용 사이버상담실, (waste.me.go.kr)】를 구축하여 05.10월부터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측정기기 부착시기

기존 오분법에 의해 만들어진 오수처리장이 향후 오분법이 폐지되고 하수도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방류수의 수질기준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나요? 또 2007년9월27일까지는 유효한 오분법을 적용하여 새로이 짓게되는 오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완공일이 2008년을 넘기게 되는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06.7.19일 이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가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3종 사업장의 부착기한인 '09.9.30일까지 별표 10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대시설을 부착하면 됩니다.

배출시설 해당여부

Q 배출시설 해당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도장시설이 있었습니다. spray type으로 도장 시설 안에서 살수공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작업 방식을 바꾸어 도장실 밖에서 작업자의 손(roller type)으로 직접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시행규칙 (별표3)에는 용적 5 cubic m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해당사항이 없다 판단되어 대기보전국 대기관리과에 문의해봤더니 해당사항이 없다며 변경신고(폐쇄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위 내용이 맞는지 여부와 폐쇄신고의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기존 별표3)의 대기배출시설중 도장실이 없이 수작업으로 도장하는 공정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 받은 대기배출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신청서에 폐쇄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변경사유 등 변경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TMS 부착유예 질의

Q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18788호에 의하면 배출허용기준의 30%이하 준수시 TMS부착을 유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부칙 유예신청 등을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신고해야 한다면 신청시기와 절차 또는 신청양식은? 아니면, 30%이하 배출에 대한 측정자료만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요?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개정 2005. 4.15)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 4.15 이전에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운영중인 시설로서 동법 동령 별표7(기본부과금 농도별 부과계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로서 부착기한만료일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측정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항상 배출된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착유예에 해당되는 경우는 자가측정자료(그간 배출시설 가동중지로 측정자료가 없다면 그 이전의 측정자료) 및 행정기관의 오염도 측정결과 등의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관리대장 및 인계서 보관

Q 건설현장 준공 후 건설폐기물관리대장 및 인계서를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 특성상 준공 후 현장사무실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준공 후 관리대장 및 인계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나요?

A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배출자등은 건설폐기물관리대장 등 각종 대장을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준공 후 현장사무실 등이 폐쇄되더라도 배출자(제2조제8호 참조)는 3년간 건설폐기물관리대장 및 인계서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소각로 폐쇄 관련

Q 소형 소각로를 설치/운영하였는데, 사용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현재 가동중지 상태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의..."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 종료신고와 폐쇄신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소각로는 회사규정에 의해 자산으로 등록되어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 까지 실제 철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 소각로를 폐쇄신고를 완료하고,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철거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A 폐기물관리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용종료신고는 폐기물매립시설에 해당되며, 폐쇄신고는 소각시설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됩니다. 소각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폐쇄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쇄신고 후 시설물 철거여부는 신고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나, 동 시설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전원장치 차단, 소각시설 투입구 봉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